

미국 목재합법성 표준지침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미국 표준지침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4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ATFS 인증서 또는 SFI 인증서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약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와 상호 인정하는 수출국의 자체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의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무역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마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한국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별 목재합법성 판단 표준가이드 템플릿에 해당서류의 발급 기관 및 서식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미국 목재합법성 관리체계

(참고자료)

본 자료는 기존 미국 표준지침('18)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23) 내용을 추가(청서)한 자료로서, 해당국과 거래 및 통관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당국과의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용이 추가·수정될 예정이오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1. 미국의 산림 소유권은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7억 6,500만 에이커(약 3억 960만 헥타르)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림의 31%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69%)는 비연방(Nonfederal) 산림으로, 민간기업이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소유 11%, 민간기업 소유 20%, 개인(가족, 부족, 기타) 소유 38%로 구분됩니다.

1-2. 미국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미국에 있는 산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억 1,400만 에이커(2억 800만 헥타르)는 경제림으로 분류되는 삼림(Timberland)입니다. 삼림이란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 목재 사용이 금지되지 않은 산업용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구성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삼림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류 여건 또는 재정적인 제약으로 목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역도 존재합니다. 삼림은 주로 사유림(민간기업 및 개인 소유 등)에서 더 큰 비중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소유한 산림 중에서는 절반 미만이 삼림(1억 800만 에이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립공원, 보존 또는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연방 및 주(州)의 토지가 포함되는 요존림(Reserved Forests)이 있습니다. 요존림에서는 대부분 벌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야, 관목림, 도시림 등을 포함한 기타 산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삼림을 제외한 요존림과 기타 산림을 합치면 미국 전체 산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이릅니다.

1-3. 미국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또한 불법 벌채된 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1) 산림 관리 부처 및 기관

미국 산림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는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산하의 산림청(Forest Service)이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본부는 국유림 관리부(National Forest System), 산림 연구부(Forest Service Research), 공유림 및 사유림 관리부(State and Private Forestry), 행정부(Administration), 국제부(International Programs) 총 5개의 부서(Program Uni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산림청은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부(Headquarters), 9개 지방청(Region), 174개 국유림 및 초지 관리소(National forests and grasslands), 600개 이상의 지구대(Ranger district) 총 4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은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산림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산림청 본부 내의 공유림 및 사유림 관리부(State and Private Forestry), 펜실베이니아주 랜더에 위치한 북동부 지역 주·사유림 관리청, 일부 지방청의 주·사유림국(과) 등을 활용하여 사유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산림청이지만, USDA 산하의 타 부서 및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산하 토지관리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국립공원 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리청(Fish and Wildlife Service, FWS) 등도 미국 산림과 관련된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2) 합법목재 교역촉진 관련 담당 부서

관련된 실무를 진행하는 부서는 레이시법(Lacey Act Team)팀입니다. 레이시법 팀은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 조직되어 있으면서, 산림청, 내무부, 주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레이시법팀은 안내 자료, 세관 신고 요건(declaration requirement) 관리, 규제 정책 개발, 교재 개발 및 출판, 신고가 필요한 품목의 범주 설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입신고서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이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기반으로 관세 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데이터베이스(DB) 및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 레이시법 웹거버넌스(Lacey Act Web Governance)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법 벌채 목재 여부를 판별합니다.

벌채 허가 관련 사항

2-1. 미국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미국 내 연방 차원에서 벌채 관련 규제가 설정된 지역은 본토(서로 인접한 48개 주) 중에서 경도 100도선 서쪽에 있는 지역¹⁾의 국유림 및 알래스카 국유림입니다. 이곳 국유림에서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취득하여 사전 승인 없이 미국 밖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거래, 교환, 기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연방규정집(CFR) Title 36-Chapter II-Part 223의 Subpart D²⁾ 또는 Subpart F³⁾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벌채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단일한/보편적 형태의 승인 또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산림관리체계의 탈집중화된 체계와 다양한 소유 형태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채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단일화/보편적 형태의 문서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⁴⁾.

2-2. 미국 내에서 산림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1) 국유림의 벌채

미국 내에 존재하는 많은 법령 및 정책이 국유림의 벌채를 관장하고 있으나, 국가산림관리법(NFMA), 연방토지정책관리법(FLPMA), 국가환경정책법(NEPA)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 산림관리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1976)

: 미국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의 계획업무 및 국유림에서의 산림관리 활동에 관한 여러 규칙과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방토지정책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1976)

1) 경도 100도선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캔자스, 오클라호마-텍사스 경계, 오클라호마, 텍사스주(州)를 지나는 곳으로,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미국 서부에는 사막지대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산림자원이 부족합니다.

2) Timber Export and Substitution Restrictions

3) The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Program

4) 미국의 버몬트주 사례를 본 가이드라인 후반부(기타 7-1)에 간략히 첨부하였으니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청(BLM)의 관리책임을 규정하면서 특히 복합용도,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보호를 공공토지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70)

: 연방기관이 제안된 행위의 환경 및 연관된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1973)

: 멸종위기종 목록을 관리하면서 생태계 회복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멸종위기 대상 동식물의 채집을 막기 위한 주(State)와의 협력, 기관 간 협력, 예외 규정 마련, 허가, 재정 지원, 국제협약 준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유림에서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계획과 환경영향분석, 제안된 벌채계획의 대안, 공공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누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당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방 토지관리기관 직원은 국유림의 벌채 및 기타 행위를 모니터할 책임이 있으며, 누구나 연방기관에 환경법령 준수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주(州) 공유림 및 사유림의 벌채

미국의 50개 주는 각 주(州)에 있는 비(非)국유림의 산림관리, 벌목, 수출, 세금·로열티, 토지에 관한 권리, 목재제품의 판매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마다 자체 법령과 요건을 마련해 왔습니다. 어떤 주(州)에는 지방 법령과 군(county)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제의 강도 역시 주(州)마다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산림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주(州)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인 관리 규정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 및 재무 관련 규정도 주마다 달라서, 연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평가 단위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재가 수확된 주(州) 또는 사업이 운영되는 주(州)를 파악하여 해당 주(州)의 산림 당국 또는 천연자원부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나 개인이 벌채 또는 목재를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 서류는 벌채와 목재제품 사업이 이루어지는 주(州)의 규정과 법령에 따라 많이 다르며, 생산 또는 거래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3) 부족림의 벌채

미국 내에 존재하는 사유림에는 부족림도 포함됩니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많은 연방 및 주(州) 등의 산림관리제도에는 부족림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원주민부족림자원관리법(National Indian Forest Resources Management Act, NIFRMA, 1990)
: 공법 101-630 제3장(Title III of Public Law 101-630)(1990)으로 제정된 이 법률은 원주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위탁 행정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과 목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원주민청-원주민 산림관리 편람 및 지침

: 계약, 인허가, 산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원주민 산림 위탁의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와 절차를 제공합니다.

부족간목재위원회(Intertribal Timber Council)

: 공식 웹사이트에서 국가 원주민 산림 및 천연자원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발표합니다.

2-3.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미국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을 규제하는 농무부, 산림청, 관세국경보호청 등 정부 기관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목재 및 목재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통관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각종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불법 벌채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BP는 미국의 경제와 안전을 보호하고 확보할 책임을 가진 부처로 알려져 있는데, CBP는 관계자는 이 책임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목 및 목재 밀수를 지원하는 단체와 맞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경우, 수입 목재 및 목재 제품과 동일하게 레이시법(Lacey Act),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등의 규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정에서는 목재 합법성 확인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재를 포함한 식물 수출입 관련 부서(USDA-APHIS-PPQ)에서는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식물위생 인증서도 발급해주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3-1. 미국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or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1)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FSC 공식 홈페이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미국 내 1,460만 헥타르(ha)의 산림이 FSC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 수 기준 FM 84건, CoC 2,023건으로 집계됩니다.

2) PEFC 인증

목재이용법의 제19조의3 제2항 위임 행정규칙인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에는 ‘국가별 PEFC 상호인정 등록 인증제도’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PEFC United States: American Tree Farm System (ATFS),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 두 가지 인증이 PEFC⁵⁾와 상호인정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7년 9월 기준 FM 3,350만 헥타르(ha), CoC 270건이 인증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 내에서 총 3,451만 헥타르(ha)의 숲이 PEFC와 상호 인정되는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⁵⁾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는 국제 비영리 비정부기구 형태로 운영되는 산림 국제인증제도로, 독립적인 제3자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촉진하고 있음(PEFC 공식 홈페이지, 2023). PEFC 인증은 크게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 FM) 인증과 임산물 생산·유통 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CoC) 두 가지로 나뉨.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4-1. 미국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림 및 목재 인증시스템은 크게 FSC 인증, ATFS 인증, SFI 인증 3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내에서 PEFC와 상호 인정되는 인증을 받은 면적은 ATFS 656만 헥타르(ha), SFI 2,795만 헥타르(ha)입니다.

1) American Tree Farm System(ATFS) 인증 절차

1. 숲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10에서 10,000 에이커의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모든 기준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ATFS 지속가능성 표준에 설명된 대로 대기, 수질, 토양 품질, 야생동물, 침입종 및 종합 해충 관리 등을 포함한 관리 계획이 있는 산림 소유주여야 합니다.
3. 관할 ATFS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ATFS 자격을 가진 산림 기술자에게 소유지 방문을 신청해야 합니다.
4. ATFS 감사관이 신청자의 소유지를 방문하여 신청자의 토지 관리 활동이 ATFS 지속 가능성 표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자격 인증이 승인되면 ATFS 표시를 게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인증 기준, 인증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ATF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www.treefarmssystem.org/>)

2)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SFI) 인증 절차

모든 SFI 표준은 인증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제3자 인증 감사를 요구합니다. 모든 인증 기관은 국제 인증 포럼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의 회원인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 또는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소속된 조직에 해당하는 SFI 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SFI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SFI의 모든 표준에 해당하는 지원자, 즉 SFI의 소규모 산림 관리 모듈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SFI는 승인된 신청서가 없는 조직에게 SFI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3. 감사 준비 - 신청자의 관리활동이 SFI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인증된 제3자 기관에 연락하여 감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4. 감사 진행 - 인증기관은 신청자의 운영지를 방문하여 SFI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 신청자의 감사인은 새로운 인증서를 SFI에 등록하게 됩니다.
5. SFI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6. SFI 상표 사용 - SFI는 신청자의 인증 및 상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SFI 홍보 및 제품 라벨, 그리고 상표 사용을 지원하는 인증 확인서 발급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 인증마크 식별 방법, 인증기관 목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SFI 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www.sfidatabase.org/>)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5-1.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미국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미국의 합법성 증명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상기에서 소개한 인증제도 외에는 미국 자체적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탈집중화된 산림관리체제로 인해 합법성 증명에 초점을 맞춘 중앙집중식 체계가 없고 합법성을 표시하는 단일한 국가 차원의 정부 발급 문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계약서, 벌채허가서, 토지소유권 등을 증명하는 문서 등이 합법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도 공급망을 추적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을 두는 경우가 있고, 자사의 제품 공급망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관련 인증체계에 의한 관리 연속성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시도는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활엽수 수출 협회(The American Hardwood Export Council; AHEC)의 경우, 2022년 7월 EU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law)에 대한 의견 제시하면서 특정 위험을 평가하는 "관할 지역 위험도 평가" (Jurisdictional level Risk Assessment; JRA) 기준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의 불법성, 산림전용, 산림 황폐화 및 더 넓은 범위의 지속 가능한 산림 원칙을 준수 하지 않는 비합법성 등을 관할 수준(미국의 경우 개별 주(州))에서 제3자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타

- 6-1.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 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미국 내에는 이와 관련하여 ‘레이시 법(Lacey Act)’이 존재하며 이는 관세국경 보호청(CBP)에 집행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레이시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대상의 식물을 수입하는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전자 혹은 서면 방식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국경 통과 및 통관 과정에서 검토하여 서류에서 위법성을 발견할 시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식물 종, 식물의 양, 상품 가치, 식물이 수확된 국가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레이시 법(Lacey Act) 요약

레이시법은 야생 동물, 어류 및 식물의 불법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 농업법(Farm Bill)이 개정된 Lacey Act (16 U.S.C. §§ 3371-3378)를 채택함으로써 동식물검역청(APHIS)을 통해 광범위한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불법적으로 벌채된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고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것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레이시 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 중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의 법(연방법, 조약, 규정, 인디언부족법, 주법 등)과 외국의 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어류, 야생동식물, 식물을 수입, 수출, 운송, 판매, 수령, 획득,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특히, 식물의 경우, 미국의 법이나 외국의 법, 그리고 식물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하거나, 정당한 로열티, 세금, 벌목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거나, 또는 그러한 제품을 수출 또는 재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어류 또는 야생동식물이 포함된 운송 용기에 연방 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 라벨 또는 태그하지 않고 수입, 수출 또는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 식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식물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수입물에 포함된 식물의 과학적 이름, 수입물의 가치 및 양, 식물의 원산지 등이며, 복합물, 종이, 재활용 식물 제품 등 자세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신고를 레이시 선언(Lacey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Lacey Act (16 U.S.C. §§ 3371-3378)를 간단히 요약하였으며, 실제 법 조항에는 법의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구체적인 처벌 규정, 예외 규정 등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 ‘레이시 선언(Lacey Declaration)’의 필요 여부

레이시법을 통해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출을 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이시법이 다루고 있는 법률은 수입 및 신고에 관한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벌채), 유통, 그리고 수출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으로 채취된 식물의 공급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도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은 레이시법이라고 알려진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의 Title 16-Chapter 53 또는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Title 7-Subtitle B-Chapter III-Part 357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된 목재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목재의 합법성 여부와 관련된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미국의 수출입 통관 시스템이 요구하는 절차와 필요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수출입 통관 자동화시스템(AC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보고를 하면 정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이 규정한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수출 제한 예외 라이선스 입력 등)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 8월 현재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르면 목재 및 목재제품 중 수출 통제 분류 번호(ECCN) 1C988에 해당하는 ‘가공되지 않은 서양 삼나무⁶⁾’가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출 통제 품목 리스트(CCL) 및 세부 규정(Part 754 ‘Short Supply Control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과정에서 ‘레이시 선언’을 통한 합법성 판단 여부

수입업자가 레이시법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자 이름에 서명을 하게 되면 신고된 제품이 합법적으로 공급된 목재로 제작되었음을 명시하는 것이 됩니다. 신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레이시법 팀에서 제품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시법 프로그램은 신고 과정에서 합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레이시법팀이 소속된 USDA의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S)의 의무는 신고 요건을 이행하는 것이며,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불법성의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 법무부나 감찰관실과 같은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4) ‘레이시 선언’에 필요한 인증서 여부

레이시 선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에 등록된 종이 포함된 경우에 수입업자는 CITES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레이시 선언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또한,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을 미국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식물위생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레이시 선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⁶⁾ Western red cedar (thuja plicata) logs and timber, and rough, dressed and worked lumber containing wane

5) '레이시 선언'이 필요한 구체적인 품목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하는 제품에 식물 재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제품이 동식물 검역청(APHIS)이 발표한 아래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코드로 분류가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식물의 학명, 생산국가, 제품의 가치(가격), 수량,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HTSUS 코드, 제조업체 식별코드(MID)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드(Heading)	품목 및 구성요소(Article/Component of Article)	발효일(Effective Date)
4401	연료 목재	2009-04-01
4403	거친 나무	2009-04-01
4404	후프우드; 기둥, 말뚝, 말뚝	2009-04-01
4406	철도 또는 트램웨이 침목	2009-04-01
4407	목재를 세로로 자르거나 깎은 것	2009-04-01
4408	축성용 시트	2009-04-01
4409	목재가 연속적으로 형성됨	2009-04-01
4417	도구, 도구 손잡이, 빗자루 손잡이	2009-04-01
4418	건축업자의 가구 제조 및 목재 목공	2009-04-01
4402	목탄;	2009-10-01
4412	합판, 베니어패널(44129906 및 44129957 제외)	2009-10-01
4414	나무 프레임	2009-10-01
4419	나무로 만든 식기 및 주방용품	2009-10-01
4420	목재 상감세공, 판, 조각상	2009-10-01
4421	기타 목재 제품	2010-04-01
6602	지팡이, 채찍, 작물	2010-04-01
8201	수공구	2010-04-01
9201	피아노	2010-04-01
9202	기타 현악기	2010-04-01
9302	리볼버와 권총	2010-04-01
93051020	리볼버 및 권총용 부품 및 액세서리	2010-04-01
940169	나무 프레임이 있는 좌석	2010-04-01
950420	당구용품 및 액세서리	2010-04-01
9703	조각품	2010-04-01
4416003010	새 통, 통, 나무 조각	2015-08-06
4416003020	조립된 나무통을 사용함	2015-08-06
4416003030	조립되지 않은 나무통을 사용함	2015-08-06
4416006010	새로운 통나무 지팡이	2015-08-06
4416006020	연목으로 만든 새로운 배럴 고리	2015-08-06
4416006030	새로운 단단한 나무 통머리	2015-08-06
4416006040	중고 통나무 침엽수 통나무	2015-08-06
4416006050	중고 고리, 연목으로 만든 단단한 배럴 헤드	2015-08-06

4416009020	새로운 기타 통, 통, 목재	2015-08-06
4416009040	중고 기타 쿠퍼폼, 목재	2015-08-06
8211926000	나무 손잡이가 달린 사냥용 칼	2015-08-06
8215992400	나무 손잡이가 달린 테이블 바베큐 포크	2015-08-06
9401612010	덮개를 씌운 티크 의자, 가정용	2015-08-06
9401612030	덮개를 씌운 티크 의자, 기타	2015-08-06
9401901500	구부러진 나무 좌석의 일부	2015-08-06
9403304000	구부러진 목재 사무용 가구	2015-08-06
9403404000	구부러진 목재 주방 가구	2015-08-06
9403504000	구부러진 나무 침실 가구	2015-08-06
9403604000	기타 구부러진 목재 가구	2015-08-06
9614002100	담배 파이프 제조용 거친 나무 블록	2015-08-06
3301295109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	2021-10-01
3301295121	리나로에 또는 부아 드 로즈의 에센셜 오일	2021-10-01
3301295139	백단향의 에센셜 오일	2021-10-01
4202292000	전부 또는 주로 종이로 덮인 재료로 만든 목재제 핸드백	2021-10-01
4202992000	기타, 나무로 만든 것, 안감을 댄 것이 아닌 것	2021-10-01
4202993000	기타, 나무로 만든 것, 줄을 댄 것	2021-10-01
441012	지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2021-10-01
4415	케이스, 상자, 상자, 드럼, 컨테이너, 팔레트, 상자 팔레트 등	2021-10-01
9205902000	관악기: 백파이프	2021-10-01
9205904020	클라리넷	2021-10-01
9205904080	기타(목관악기)	2021-10-01
9205904060	플루트와 피콜로	2021-10-01
9206002000	드럼	2021-10-01
9207900040	악기(프렛 현악기)	2021-10-01
9209.92	제9202호의 악기용 부분품과 부속품	2021-10-01
9209992000	백파이프 부품 및 액세서리	2021-10-01
9209994040	기타 목관악기용 부품 및 액세서리	2021-10-01
9209998000	다른	2021-10-01
9620005500	단각대·양각대·삼각대 및 이와 유사한 목재제품	2021-10-01

자료: USDA 공식 홈페이지(Lacey Act Declaration Implementation Schedule).

한편, 현재 레이시범은 2021년 10월부터 개정된 레이시범 6단계(Phase 6)로 진행되고 있으나, 2023년 중에 추가된 수입신고 의무 품목을 발표한 뒤 6개월 후부터 레이시범 7단계(Phase 7)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레이시범 7단계의 주요 내용은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분류된 나무 제품은 100% 복합재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레이시범에 따른 수입신고가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구, 기타 에센셜오일, 코르크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6) '100% 복합재료'의 의미 및 신고 방법

레이시법은 '100% 복합재료'를 화학적으로 결합된 여러 종류의 나무의 작은 섬유질로 만들어진 재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MDF(Medium-density fibre), OSB(Oriented Strand Board), HDF(High Density Fiberboard), 파티클보드, 종이, 판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향후 연구를 통해 복합재를 가장 적합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합재료를 수입할 때는 해당 물건에 사용된 나무(또는 식물)의 구체적인 종과 학명을 알 수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식물의 학명을 적는 곳에 "특수용도지정(Special Use Designations, SUD)"이라고 기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복합재료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제품 내에 식별 가능한 구성요소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수용도지정(SUD)은 구체적인 전체 수종은 알 수 없으나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일부 수종 집합을 구성하여 Amabilis Fir and Western Hemlock (AATH), Western Larch and Douglas Fir (LOPM), Spruce, Pine, Fir (SPF) 등의 특수 항목을 지정하기도 했으며, 재활용 목재, 재사용 목재, 레이시법 개정(2008년 5월 22일) 이전에 가공된 제품 등에 대해서도 특수용도지정(SUD)의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용도지정(SUD)의 활용에 관해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레이시법 7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2. 미국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 제품의 합법성 식별,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증명 등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 혹은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미국은 불법 벌채 목재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NGO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조사기구(EIA:EnvironmentalInvestigationAgency)

불법벌채 및 산림파괴 방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NGO로써, 지난 20년 동안 산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전 세계로 홍보하였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벌채 및 밀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국제환경법센터(CIEL:CenterforInternationalEnvironmentalLaw)

1989년부터 국제환경법센터(CIEL)은 환경보호법 및 규정을 통해 글로벌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산림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와 환경 및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벌채 목재 거래법을 강화하고 시행 효율화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3) 산림경향(Forest Trends)

1998년 설립 이후 산림 및 자연 생태계 경제가치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시법(Lacey Act)의 효과적 시행 및 산림가치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물다양성,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탄소상쇄 프로그램, 산림지 원주민 권리, 친환경시스템 시장가치 창출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불법 벌채 위험성을 평가하고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1982년 설립한 환경 NGO이며 글로벌 연구기관입니다. 산림합법성연맹(Forest Legality Alliance)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Global Forest Watch” 웹사이트를 통해 산림의 중요성 및 불법 벌채 근절 등 산림환경 보호 홍보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산림합법성이셔티브(Forest Legality Initiative), 산림합법성연맹(Forest Legality Alliance)

산림합법성이셔티브(Forest Legality Initiative)는 미국 기업 및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벌채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협력 NGO인 산림합법성연맹(Forest Legality Alliance)이 운영하는 “Open Timber Portal” 플랫폼에서 벌채한 원목의 합법성 인증 및 국제거래 규정, 불법 벌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재합법성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국제협력 구축,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연구, 효율적 실사(Due Diligence, Due Care) 프로그램 개발, 목재이력추적 시스템 개발, 불법벌채 목재 DNA 분석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7-1. 미국의 목재 벌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전반적인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버몬트주 사례 첨부

본 내용은 미국 버몬트주에서 산림 소유주들이 목재를 생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가이드라인 (“Voluntary Harvesting Guidelines for Landowners in Vermont”) 중 1장 3절의 법적 요구사항(“Legal Requirements”)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목재 생산 단계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 벌채 허가서(40에이커 이상인 경우만 해당), 산림 경영 계획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조언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버몬트주에는 생산관리 및 소득과 관련된 법과 규정이 있으며, 수질 보호 및 희귀 동식물종 보호법 등의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토지 관리자로서 중요하며, 수확의 시기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목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나무관리업자, 벌목업자가 논의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법적 문제 및 의무사항 목록입니다.

1. Acceptable Management Practices (AMPs):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Forests, Parks and Recreation)
2. Threatened and Endangered Species: 버몬트에서 멸종위기종과 서식지를 보호하는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Vermont Fish & Wildlife Department)
3. Vermont Wetland Rules: 웅덩이와 같은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Vermont Natural Resources Board)
4. Lake Shoreland Protection Act: 연못과 호수 근처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Vermont Watershed Management Division)
5. Stream Alteration: 시냇물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Vermont Watershed Management Division)
6. Stormwater Discharge Permits: 산림 관련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Vermont Watershed Management Division)
7. Timber Trespass: 타인의 나무를 허가 없이 베거나 파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13 VSA Chapter 77, Sections 3606 and 3609)
8. Heavy Cutting: 40 에이커(약 5만 평) 이상 벌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epartment of Forests, Parks and Recreation)
9. Fire Prevention/Slash Removal: 공공 도로나 다른 토지의 경계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서 나무(잎, 가지, 뿌리 등)를 제거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Forests, Parks and Recreation)
10. Act 250: 2,500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벌목 작업을 할 경우 토지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Vermont Natural Resources Board)

11. Use Value Appraisal (Current Use): 프로그램에 등록된 토지에서만 적용되며, 등록된 사람은 산림 경영 계획을 준수하며 일정 주기마다 이를 갱신하고 보고합니다. (Vermont Division of Property Valuation and Review)
12. Town Ordinances/Zoning: 숲을 관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방 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Vermont League of Cities and Towns)
13. Taxes: 상황에 따라 연방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Vermont Department of Taxes)
14. Trucking: 트럭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허가 및 요건이 있습니다.
15. Human Health and Safety: 벌목 업종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Vermont Department of Labor,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16. Chip Harvesting Requirements for Vermont Public Utilities: 버몬트의 목재 연료 전력 발전소는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자에게서 연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목재 생산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17. Easements, Covenants, and Deed Restrictions: 수확 또는 토지 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또는 행동 강령입니다. 제3자 인증서 등도 일부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나 계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유주의 산림 경영 계획(Current Use plan)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산림 경영 계획을 수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이웃에게 알리거나 공공시설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7-2. 서로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정보와 질문에 해당하는 문서의 샘플(수출 허가증, 벌채 허가서,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들에 답변한 바와 같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경우 레이시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수출되는 목재의 경우 별도의 수출 허가 및 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벌채 허가증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의 통일된 허가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주(州)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로 미국 목재를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향후 국내 목재합법성 확인 절차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 식물 및 식물 제품 수입 신고서 서면양식(PPQForm505)

According to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valid OMB control number. The valid OMB control number for this information collection is 0579-0349.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is information collection is estimated to average 0.5 hours per response, including the time for reviewing instructions, searching existing data sources, gathering and maintaining the data needed, and completing and review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MB APPROVED
0579-0349
EXP.: 04/2022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LANT AND PLANT PRODUCT DECLARATION

SECTION 1 – Shipment Information

1. ESTIMATED DATE OF ARRIVAL (MM/DD/YYYY)	2. ENTRY NUMBER
3. CONTAINER NUMBER(S) <input type="checkbox"/> See Attachment	4. BILL OF LADING
6. IMPORTER'S NAME	5.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MID)
8. IMPORTER'S ADDRESS	7. CONSIGNEE'S NAME
10. DESCRIPTION OF MERCHANDISE	9. CONSIGNEE'S ADDRESS

SECTION 2 – Compliance with Lacey Act Requirements (16 U.S.C. 3372(f))

For each article or component of an article, provide the following:

11. HTS NUMBER <small>(no dashes/symbols)</small>	12. ENTERED VALUE	13. ARTICLE/COMPONENT OF ARTICLE	14. PLANT SCIENTIFIC NAME		15. COUNTRY OF HARVEST	16. QUANTITY OF PLANT MATERIAL	17. UNIT	18. PERCENT RECYCLED
			Genus	Species				

I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information furnished is true and correct.

PREPARER'S NAME (printed)	PREPARER'S SIGNATURE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DATE (MM/DD/YYYY)
---------------------------	----------------------	---------------	------------------	-------------------

PPO FORM 505
APR 2020

NOTE: Knowingly making any false statement in this Declaration for importation may subject the declarant to criminal penalties in accordance with 16 U.S.C. 3373(d).
(Previous editions are obsolete.)

3)(예시) 버몬트주 대량 벌채 신고서(HeavyCutApplicationForm_2017)

버몬트주의 경우, 사유림에서 40에이커(약 5만 평) 이상 벌채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미만의 면적에서는 앞서 (7-1)에서 논의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의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DEPARTMENT OF FORESTS, PARKS AND RECREATION	
1. APPLICATION: (TO BE COMPLETED BY THE LANDOWNER)	
<p>This form is to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 one of the DISTRICT OFFICES (<i>list attached</i>) of the Division of Forestry, Department of Forests, Parks and Recreation, Agency of Natural Resources. Intent to Cut notification is needed ONLY IF the landowner plans to implement a HEAVY CUT of FORTY ACRES or more. A heavy cut is defined as "a harvest leaving a residual stocking level below the C-line as defined by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silvicultural stocking guides for the applicable timber type." Incomplete applications will be returned within 48 hours of such determination.</p>	
Landowner's Name: _____	
Day Time Phone: _____	Evening Phone: _____
E-mail Address: _____	
Home Address: _____	Business Address: _____
Consulting Forester Name (if Applicable): _____	
Day Time Phone: _____	Evening Phone: _____
E-mail Address: _____	
Home Address: _____	Business Address: _____
Location of Parcel: (<i>County, Town, and Road Name</i>) _____	
Size of Parcel: _____ (acres)	Size of Proposed Heavy Cut: _____ (acres)
Location of other owned parcels which have been heavily cut within 2 miles: _____	
Acres involved in heavy cut within past five years: _____	

INTENT TO CUT NOTIFICATION
Page 3
Rev. 2/7/2017

2. EXEMPTIONS: (TO BE COMPLETED BY THE LANDOWNER)

No further review is required if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 This notice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even though the harvest is not subject to regulation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law.
- I (the landowner) certify that the proposed heavy cut is intended to carry out an agricultural conversion plan, and that the conversion will be completed and the land will be in agricultural production within five years.
- I (the landowner) certify that the proposed heavy cut is a conversion subject to regulation by a district commission and the environmental board under 10 V.S.A. chapter 151 Act 250 or by the public service board Title 30.
- I (the landowner) certify that the proposed heavy cut is consistent with one of the following:
 - 1. A forest management plan currently in effect and approved by the department under the Use Value Appraisal program.
 - 2. A chip harvesting plan currently in effect and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under a permit issued under 30 V.S.A. §248.
 - 3. A forest management plan currently in effect and approved by the department under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approval of the plan.

Landowner Certification:

I, _____, as landowner of record, do attest and
Name (printed or typed)
certify that the items checked above are true and represent the conditions under which I apply for an Exemption to Proceed under the Heavy Cut Provision of 10 V.S.A. §2622.

Signature

Date

DETERMINATION OF EXEMPTION (TO BE COMPLETED BY FPRI)

I have reviewed this Notification and have determined that **NO FURTHER REVIEW** is required:

Name (printed or typed)

Signature
Department Field Forester

Date

3. FOR PARCELS THAT DO NOT QUALIFY FOR AN EXEMPTION:

I, _____, as landowner of record, do attest and
Name (printed or typed)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esented below is true and represents the conditions under which I apply for an Authorization to Proceed under the Heavy Cut Provision of 10 V.S.A. §2622.

Permission is granted for a department forester to enter upon the property for which I seek a permit:

Yes

No

Note: **Denial of permission to enter may mean that a permit may be delayed or cannot be issued.**

Signature

Date

Description of Proposed Harvest: *(TO BE COMPLETED BY LANDOWNER)*

Please include stand type, stocking level, basal area and position relative to the "C line". Attach any other information including a location map.